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97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6.

발 의 자:임호선・박해철・정준호

이학영 · 김승원 · 이재정

권칠승·안태준·허 영

이원택 • 윤준병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고, 어린이 놀이터 ·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과 이용 시설의 설치 등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.

그런데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는 농업진흥구역과 증상 발현 시 응급치료를 해야 하는 온열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볼때 농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음. 또한,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화장실, 마을공동주차장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고 농기자재판매시설 및 우시장 등의 가축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화장실, 샤워시설, 마을공동주차장, 무더위 쉼터, 농기자재판매 시설 및 가축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원활한 농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제2호 중 "마을회관"을 "마을회관, 화장실, 샤워시설, 마을 공동주차장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0.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무더위 쉼터의 설치
- 1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기자재판매시설 및 가축판매시설의 설치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	제32조(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
한)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	한) ①
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	
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	
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. 다	
만,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	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어린이놀이터, <u>마을회관</u> , 그	2 <u>마을회관, 화</u>
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	장실, 샤워시설, 마을공동주차
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	<u> 장</u>
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	
3. ~ 9. (생 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0.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
	무더위 쉼터의 설치
<u><신 설></u>	1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기
	자재판매시설 및 가축판매시
	설의 설치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